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행심2020-5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중학교장
재 결 일 자 2020. 3. 23.

주 결 문

피청구인이 2019.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과 피해학생 ●●●(이하 ‘피해학생’ 이라 한다)은 □□□□중학교 학생으로 2019년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학년 #반에, 피해학생은 #학년 #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2019. 9. 10.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청구인을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여 2019. 10.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고 한다)가 개최되었고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0. 15.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조치결과 통지서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치원인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청구인은 다른 학생에게 청구인의 페이스북 에스크(익명으로 해당 계정 당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이트)에 피해학생이 익명으로 욕설을 쓴 것 같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사과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친구들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상적 대화이고, 피해학생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

라. 청구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피해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고, 피해학생은 2018년경 청구인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다. 청구인은 다른 반 소속인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반에 자주 출입하자 이를 담임교사에게 말하기 위해 증거자료 수집 차원

에서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통지서 조치원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치위원회는 청구인이 피해학생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회의 개최 당시 이 사건 피해학생 측 진술, 이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들의 진술, 가해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한 결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청구인 역시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학교폭력 행위로 신고되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부인하거나 혹은 동영상 촬영에 대해 인정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조치결과 통지서를 받아 권리구제 절차인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치의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동영상 촬영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동영상 촬영 역시 다른 반인 피해학생이 자꾸 청구인의 교실로 들어와 피해를 주고 있어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이므로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2018년도에 피해학생과 학교폭력으로 연관되어 관계가 좋지 아니한 점, ② 청구인은 에스크에 피해학생이 청구인에 대한 욕을 하고 있다며 참고인에게 이야기 하였고, 이를 들은 참고인이 피해학생

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한 점, ③ 청구인은 1학기 학교폭력예방교육 시간에 다른 참고인에게 작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점, ④ 청구인은 평소에도 피해학생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닌 정황이 있는 점, ⑤ 피해학생이 청구인이 있는 교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나 단순히 불일이 있는 경우 출입하는 정도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출입한 사실만을 가지고 피해학생의 허락 없이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서로 학교폭력으로 연관되고 한창 민감할 나이의 중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피해학생은 학교생활을 하는데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

다. 자치위원회는 이 사안의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위한 점수 산정이 심각성 1점, 지속성과 고의성이 없어 0점, 청구인의 반성정도와 관련 학생 및 보호자들 간의 화해정도를 각각 4점으로 하여 총 9점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점수이나, 청구인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인 1호 서면사과 조치로도 선도가 가능하고 교육적인 조치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선도 교육적인 목적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고, 그 조치의 경중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조치원인에 “2019년 9월 10일(화) 11시 40분쯤 ○○○ 학생이 ●●● 학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음해하였다며 ●●● 학생이 교우 관계 등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진상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 학생에게 청구인의 에스크에 욕설이 있었는데 피해 학생이 쓴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이하 ‘에스크 사건’ 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 학생에게 피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였고 말하였다(이하 ‘사과 사건’ 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19. 4. 30. #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학생 모르게 3초 간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이하 ‘동영상 촬영 사건’ 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조치원인을 보면, “2019년 9월 10일(화) 11시 40분쯤 ○○○ 학생이 ●●● 학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음해하였다며 ●●● 학생이 교우 관계 등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진상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함” 이라

고 기재하여,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청구인은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간사로부터 에스크 사건, 사과 사건, 동영상 촬영 사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였는데, 에스크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다른 학생에게 청구인의 에스크에 피해학생이 익명으로 욕설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사과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동영상 촬영 사건에 대해서는 3초짜리 동영상을 한번 찍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담임교사에게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반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증거자료로서 촬영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고의를 다투었는데, 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전부 배척된 것인지,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진 것인지, 특히 동영상 촬영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것인지 여부가 조치결과 통지서의 기재 내용을 보아서 알 수가 없다.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에는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음해하였다’는 피해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행위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와 같이 기재된 피해학생의 주장내용은 자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과도 차이가 있어, 그 밖에 조치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행정구제절차에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서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먼저 에스크 사건과 관련하여, 유일한 증인인 △△△ 학생은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어떻게 말하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피해학생이 에스크에 욕설을 썼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은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는바, 설령 청구인이 △△△ 학생에게 청구인의 에스크에 익명으로 욕설을 쓴 사람이 피해학생인 것 같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추측성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학생을 헐담, 음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사과 사건과 관련하여, 유일한 증인인 ◇◇◇ 학생은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단순히 사과를 못 받았다는 말만 했고, 직접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과라는 단어에서 이를 추측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이 위와 같이 단순히 피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학생에 대해 험담하였거나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해학생 몰래 1회 3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반에 자주 출입하여 이를 담임교사에게 말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학생은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촬영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촬영할 때 나는 소리를 듣고 알았으며 한번 찍은 것 같은데 피해학생이 찍혔을 수도 있어서 피해학생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면 영상이 아래쪽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어 피해학생 모르게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사진의 내용도 피해학생이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피해학생의 특정 신체부위 또는 피해학생의 특정 행위가 촬영된 것은 아니어서, 피해학생을 괴롭힐 의도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후 청구인은 담임교사에게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반에 자주 찾아오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당시 촬영 상황, 촬영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게 된 경위, 촬영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동영상 촬영과 관련한 학교폭력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청구인의 행위들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V.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